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b>보도자료</b>		담당 부서	조사7과
	배포일시	2024. 9. 9.(월) 08:00	연락처	과 장 김경미
	보도일시	2024. 9. 9.(월) 12:00		02-3393-9950

(04554)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5~6층 (02-3393-9700)  
<3.15의거과> (51727)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1길 2 (055-246-8626)  
언론·홍보팀장 양지훈 (02-3393-9726), 홍보전문위원 박영일 (02-3393-9730)

## 전국 곳곳에 또 다른 형제복지원들… 37년간 은폐된 인권침해 진실규명

- 서울시립갱생원·대구시립희망원·충남 천성원(성지원, 양지원)·경기 성혜원의 강제수용, 폭행 및 가혹행위, 독방 감금, 강제노역 등 확인
- 집단수용시설 총체적 피해 회복 조치 필요 … 개별 구제신청 없이도 국가 차원의 추가 피해 조사 및 보상재활 시스템 마련 권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 6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86차 위원회에서 '서울시립갱생원 등 성인부랑인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윤○○ 등 13명)'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했다.
- 서울시립갱생원, 대구시립희망원, 충남 천성원(대전 성지원, 연기군 양지원), 경기 성혜원 4개소는 1975년 내무부훈령 제410호, 1981년 구결 행위자보호대책, 1987년 보건사회부훈령 제523호 등 부산 형제복지원과 동일한 정부 시책에 의해 운영된 성인부랑인수용시설로서, 경찰·공무원 등에 의한 강제수용, 본인 의사에 반하는 '회전문 입소', 폭행 및 가혹행위, 독방감금,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 부산 형제복지원은 1987년 인권침해 실상이 폭로되어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이 있었지만, 4개소는 당시 어떠한 공적 조사도 받지 않은 채 부랑인 수용 업무를 계속했다.
- 특히 1987년 2월 당시 야당이던 신민당이 부산 형제복지원에 이어 충남

천성원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했으나 시설 측이 정문을 막고 국회의원·기자 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조사가 좌절됐다.

- 이번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는 지난 37년간 은폐돼 온 전국 부랑인수용 시설 인권침해의 실상을 최초로 종합적으로 규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앞서 형제복지원 조사 과정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던 국가의 부랑인 단속 정책 및 시설 운영 지원 전반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다수의 자료를 최초로 입수했다.

- 특히 충남 천성원이 1982~1991년 충남도청, 충남도경, 대전시, 연기군 등과 주고받은 공문서 및 수용자 신상기록카드 등 3만여 쪽을 입수해 시설 인권 침해의 국가 책임을 규명했다.

□ 조사 결과, 정부는 사회정화라는 명목을 내세워 수시로 경찰·공무원 합동 단속반에 의한 불법적 단속 및 강제수용을 지속했고, 민간 법인에 해당 시설들의 운영을 위탁하면서 감금·폭행·강제노역 등 여러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치했다.

- 특히 신청인 13명 중 6명은 형제복지원에서 타 시설로 강제 전원, 3명은 형제복지원 퇴소 후 재단속되어 타 시설에 강제수용된 경우로, 이번 조사를 통해 시설 간 ‘회전문 입소’에 따른 장기 수용 등 인권침해 실상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 그 외에도 도시 재건 사업 투입 목적의 ‘새서울건설단’ 동원(서울시립갱생원), 규칙 위반자에 대한 ‘신규동’ 독방 감금(대구시립희망원), 시설 간부 등의 구타로 인한 폭행치사 사건(충남 천성원 산하 양지원), 시설 사망자 시체의 해부실습용 교부(충남 천성원 산하 성지원), 연고지와 무관한 ‘수용자 돌려막기’ 목적의 강제 전원(경기 성혜원) 등을 밝혀냈다.

□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실질적 피해 회복 조치, △시설수용 인권침해 재발방지책 마련, △지속적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또한 형제복지원 등 진실화해

위원회가 진실규명한 다른 집단수용시설 피해까지 아우르는 특별법 제정 등 종합적 피해 회복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 이외에도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활동 종료 이후에도 추가로 확인되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 활동을 제도화하고, 피해자들의 개별 구제신청 없이도 적절한 보상 및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붙임 서울시립갱생원 등 성인부랑인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 1부

# 서울시립갱생원 등\* 성인부랑인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

\* 서울시립갱생원, 대구시립희망원, 충남 천성원(대전 성지원, 연기군 양지원),  
경기 성혜원 총 4개소

## 충남 천성원(성지원, 양지원) 1987년 신민당 조사 시도 관련 경과

□ 1987년 2월 당시 야당이던 신민당이 부산 형제복지원에 이어 충남 천성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시설 측의 국회의원·기자 폭행 사건으로 조사 좌절, 이후 37년간 전국 부랑인수용시설 인권 침해의 진실은 은폐되어 왔음

'보도일자	기사명 (언론사)	기사 상세 내용
1987. 2. 2.	· 연기군 부랑아수용소서도 원생 한 명 맞아 숨져 (동아일보)	· 1987. 2. 1. 오후 6시경 양지원에서 중대장 김○○(남, 27세)이 원생 윤○○(남, 36세)를 곡괭이 자루로 때려 중태, 대전 시내 병원으로 옮기던 중 사망 · 윤○○이 'TV를 보니 부산 형제복지원에서는 간부들이 부정을 저질렀다더라' 는 말을 하자, 중대장 김○○이 폭행을 가했음
1987. 2. 7.	· 성지원원생 20명 탈출 14명은 봉고차 도주 (경향신문)	· 성지원 원생 20명 오전 11시 20분경 집단 탈출, 이 중 14명은 봉고차를 탈취해 서울 방면으로 도주 · 봉고차 탈취 14명 중 3명은 오후 1시경 경기도 안성 부근에서 검거, 나머지 11명은 차를 버리고 도주, 미검거 17명 긴급수배
1987. 2. 10.	· 신민 진상조사단 원생이 집단폭행 (경향신문) · 신민 인권 조사단에 폭행 (동아일보) 등 다수	· 신민당 진상조사단 대전 성지원 현장조사를 위해 방문 · 조사단 도착 당시 성지원원생 30여 명이 정문을 막고 욕설·폭행, 조사단원 및 취재기자에게 상해를 입힘
1987. 2. 11.	· 신민 폭행 조사단도 철문 닫혀 못 들어가 (경향신문) · 신민조사단에 잇단 폭력행패 (동아일보) 등 다수	· 신민당 조사단,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재방문했으나 성지원 측은 오물을 뿌리며 저항 · 오전 10시 45분경 성지원 봉제부 수용자 61명 무기한 농성, 창문 밖으로 인권침해를 알리는 호소문을 신민당에 전달 (폭행 가담자는 원생이 아닌 직원들로, 원장이 폭행을 사주한 것이라 주장)
1987. 2. 12.	· 與 간부들, “야당 의원들이 맞을 짓 한 것 아니냐” 원색적 표현 (동아일보)	· 여당인 민정당은 신민당 조사단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난 - “도대체 신민당 의원들이 그 같은 조사를 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나” (이한동 총무) - “미국 뉴욕의 할렘 지역의 경우에도 경찰조차 접근하지 못한다. 어느 나라에나 그런 곳은 있는 법인데 국회의원들이 가서 뭘 어쩌겠다는 거냐” (익명 당직자)
1987. 2. 13.	· 성지원 사건은 쌍방폭행 (경향신문)	· 대전지검, 수사전담반 편성해 신민당 조사단 및 성지원 측 모두 조사, 이 사건을 '쌍방 폭행' 으로 규정
1987. 2. 13.	· 신민 조사단 12명 지사실 한때 농성 (경향신문)	· 신민당 전국복지원실태조사단 의원 12명은 12일 오후 7시 20분부터 13일 오전 8시 20분까지 충남도청 도지사실에서 성지원 운영 실태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며 철야농성
1987. 2. 17.	· 복지원 조사 국조권 촉구 (동아일보)	· 신민당, '전국 복지원 실태 특별조사' 결과 및 대정부 요구사항 발표 - 전국 36개 복지원에 수용되어 있는 1만6천명(정부 발표)에 대한

'보도일자	기사명 (언론사)	기사 상세 내용
		<p>일제조사 실시, 본인의사에 따라 석방 등의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문의 사망자에 대한 사인 규명</li> <li>- 수용자가 착취당한 임금은 일반 노동자의 수준으로 보상</li> <li>- 비리가 드러난 형제복지원 원장 및 성지원 원장 등 관련자의 재산 압류</li> </ul>
1987. 2. 28.	· 성지원 221명 탈출 소동 (동아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7일 오후 2시 10분경 성지원 수용자 538명 중 221명이 집단 탈출, 대전 시내에서 한시간여 동안 기둥행진을 벌이며 경찰 1천여 명과 대치하다 219명 검거되어 성지원에 재수용</li> <li>· 검거되지 않은 현○○(41), 조○○(33)는 이날 오후 6시경 신민당 대전 동구지구당 송천영 의원 사무실을 거쳐 28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 회관 내에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했으나, 다음 날인 3. 1. 경찰에 연행됨</li> </ul>
1987. 3. 1.	· 술취해 끌려가서 강제노역 당했다 (조선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시 측이 개별면담결과 연고자가 있으면 보내준다고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적립된 임금도 돌려주지 않는데 항의하다 정문을 열고 뛰쳐 나왔다.”</li> </ul>
1987. 3. 2.	· 탈출 2명 폭로 “성지원 폭행난무 생지옥” (동아일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에서 올린 친구 결혼식에 참석, 술에 취해 대전역 앞 담에 기대고 있다 성지원 단속반에 의해 성지원에 강제수용되었다.” (조○○)</li> <li>- “모 술집에서 술을 먹다 주인과 시비, 무전취식 혐의로 파출소에 넘겨진 뒤 성지원에 수용, 강제노역을 해왔다.” (현○○)</li> </ul>
1988. 9. 1.	· 대전 성지원 원장 실형 선고...구속 (동아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 31. 노○○(천성원 대표) 법정 구속(신민당 조사단 폭행 관련), 강제수용 및 인권침해에 대한 수사는 없었음 (※1988. 11. 11.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li> </ul>



◀ 신민당 조사단 폭행 사건 관련 보도 (대전일보 1987. 2. 11.)



## ‘내무부훈령 제410호’ 구체적 업무 지침 첫 확인 ‘퇴소 후 재수용 시 처벌 감수’ 서약서 받기도

-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 8. 23.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을 통해, 부랑인 단속 및 강제수용의 근거 규정이었던 ‘내무부훈령 제410호’\*(1975. 12. 15. 제정)가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을 어떠한 형사절차도 거치지 않고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 위헌·위법한 규정이라 판단하였음
  - \* 정식 명칭은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이와 관련, 본 조사를 통해 서울시가 관할 기관에 시달한 ‘내무부훈령 제410호’의 세부 처리 지침(1976. 2. 3.)을 최초로 확인하였음
  - 단속기관(구청장, 경찰서장)이 수용시설(서울시립갱생원 등)에서 순회하는 수송차량에 인계인수 전까지 부랑인의 도주 방지 및 신상카드 작성을 하도록 하는 등, 국가기관의 책임이 분명하게 드러남
  - 부랑인 퇴소 후에 재단속재수용 될 경우, 당사자 또는 연고자가 경범죄처벌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서약서를 쓰도록 함 ⇒ 강제수용에 더해 기존 법령에 따른 처벌까지 부과하는 이중처벌
- 한편, 시설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망 등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연고자가 시설 측에 어떤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각서를 받은 사례(충남 천성원 산하 양지원)도 확인 됨



▽ 보호자신병각서 (충남 천성원 산하 양지원)

각 서

에 대하여

상기자는 앞서 큰 무수

사고시에 사망하여

이의 없음을 각서함

1985. 6. 20.

보증인

소하

양지

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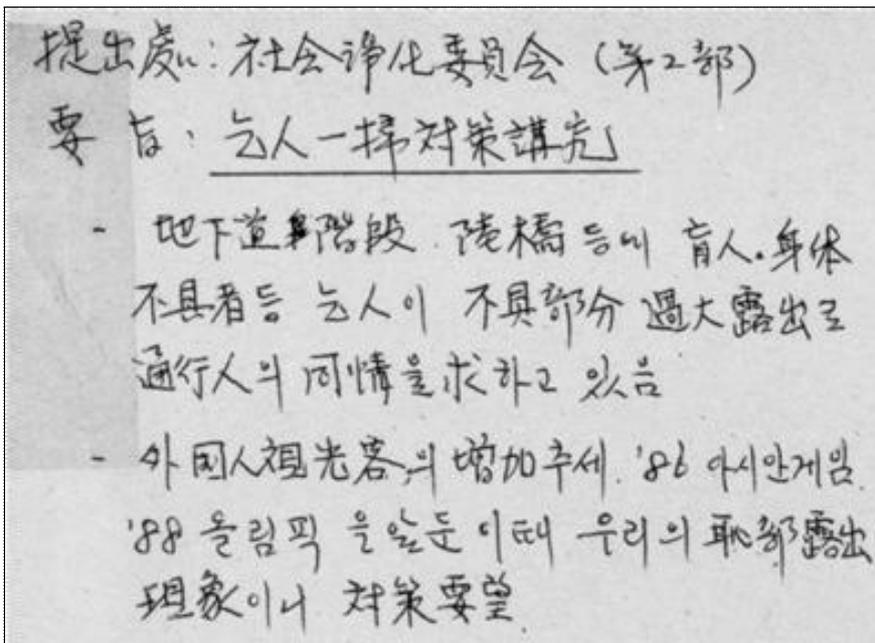
①



## 서울올림픽 앞두고 대대적 불량인 단속 ... '형제복지원 모델' 따라 비용 절감 방안 지시도

- 전두환 대통령 지시, 국무총리실 주재로 수립된 「구걸행위자보호대책」 (1981. 10. 8.)에 따라 불량인 단속 상시화 및 시설 설비 확충 등을 추진
- 이에 각 시·도에서도 불량인 단속의 세부 계획을 세워 추진했는데, 서울시는 1982. 4.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을 앞둔 이때 우리의 치부 노출 현상이니 대책 요망”이라는 사회정화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각 구청별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실시했음

### ▽ 사회정화위원회 '걸인일소대책강구' (1982. 4.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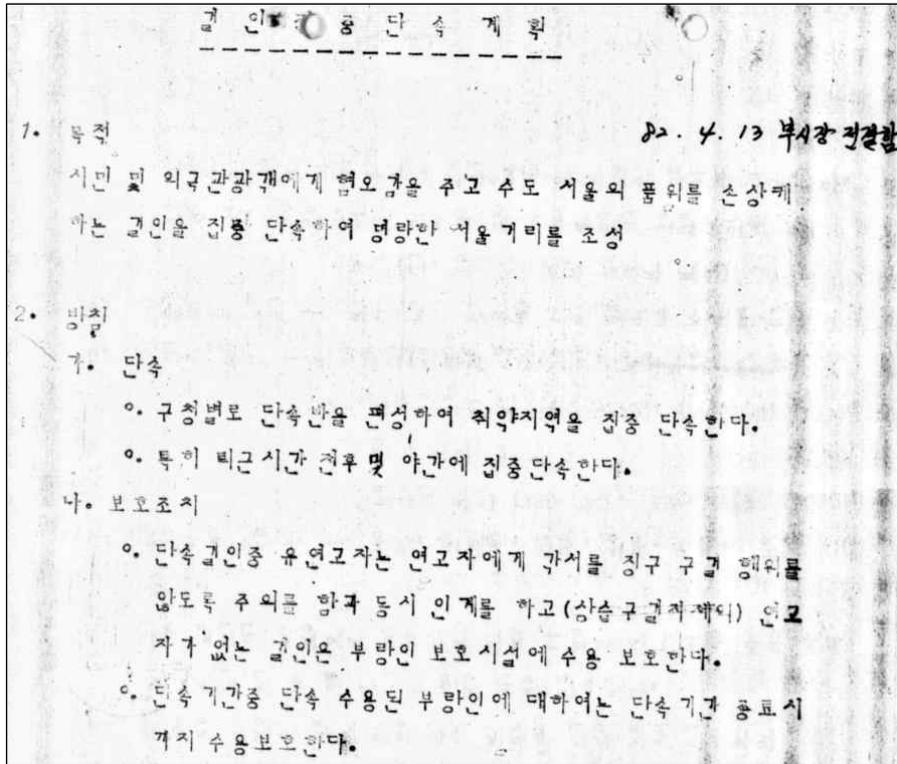


제출처: 사회정화위원회 (제2부)

요지: 걸인일소대책강구

- 지하도 계단, 육교 등에 맹인, 신체 불구자 등 걸인이 불구 부분 과대 노출로 통행인의 동정을 구하고 있음
-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 추세,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을 앞둔 이때 우리의 치부 노출 현상이니 대책 요망

▽ 서울특별시, 결인집중단속계획 (1982. 4. 13.)



□ 경기 성혜원은 이사회 회의록(1982. 11. 13.)을 통해 1978년 이후 법인의 목적사업을 '부랑인선도시설'로 변경하고 수용 규모를 늘린 배경이 "88년 서울 올림픽을 대비한 정부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구결행위자보호대책」에 따라 서울시립갱생원 등 전국 부랑인수용 시설 10개소에 시설 신·증축 예산이 지원되면서 정부는 '부산 형제복지원'을 모델로 삼아 투자비 절감방안(수용자 노동력을 무급으로 활용) 강구를 지시

○ 동 대책에 따라 당초 시 직영으로 운영 중이던 대구시립희망원 등을 민간위탁하면서, 이미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던 형제복지원이 시 직영 사례보다 1인당 운영비를 절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

## 서류에는 ‘연고지 이송’, 실제로는 ‘수용자 돌려막기’ 시설 간 회전문 입소 실태 첫 확인

- 전국 부랑인수용시설 간에 수시로 이뤄진 수용자 전원 조치의 명목상 사유는 ‘연고지 이송’이었지만, 실제 수용자의 연고지는 전원 시설 소재지와 무관한 경우가 다수
- 일례로 1986년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경기 성혜원으로 전원된 수용자 (총 69명) 중 구체적 신상자료가 남아 있는 9명의 기록을 보면, 본적 또는 주소지가 경기 지역인 사례는 단 2건

### ▽ 1986년 부산 형제복지원 → 경기 성혜원(화성군) 전원자

No.	성명	형제원→성혜원 전원일	서류상 성혜원 입소일	전원 사유	본적	주소
1	서○○	86-04-07	86-06-23	연고지 이송	미상	미상
2	임○○	86-04-07	86-07-04		충남 부여군	충남 대전시
3	조○	86-04-07	86-06-24		경남 밀양군	경기 시흥군
4	조○○	86-04-07	미기재		강원 홍천군	강원 홍천군
5	김○○	86-04-07	86-06-28		경남 거창군	경남 거창군
6	김○○	86-08-06	86-10-24		부산 남구	부산 남구
7	노○○	86-08-06	86-10-24		충남 공주군	충남 공주군
8	김○○	86-08-06	86-10-24		서울 서대문구	부산 진구
9	김○○	86-08-06	86-10-24		경북 안동군	경기 의정부시

-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이러한 전원 조치는 △타 시설 노동력 동원 △규칙 위반자 처벌 △타 시설 인원 충원을 위한 단순 ‘수용자 돌려막기’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됨

- “대전 성지원, 부산 형제복지원, 대구 희망원은 시설의 필요에 따라 수용자들을 이송시켰고, 탈주를 했다가 다시 잡히면 낯선 타 지역으로 이송시키는 경우도 많았다.” (1987년 신민당 조사 진술, 성지원 수용자 이○○)
- “부산 형제원에서 폭행을 많이 당해 몸이 시퍼렇게 된 사람들이 성혜원에 와서 한 달 있다가 대구 희망원으로 가고, 희망원에서 있다가 폭행을 심하게 당하면 인천 ○○원에 보내는 식으로 ‘뺑뺑이’를 돌렸다” (경기 성혜원 수용자 박○○)

□ 단순 규칙 위반 등을 처벌할 목적으로 타 시설로 전원되는 사례로는 마리아수녀회 산하 아동시설인 소년의집에서 18세 미만 아동들이 성인시설인 서울시립갱생원으로 전원되어 성인들 사이에서 폭력적 생활환경에 노출되었음

- “갱생원 버스에 손톱으로 긁었다가 걸렸는데, 원생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본보기라고 하면서 수사가 얼굴, 가슴을 폭행했다” (서울시립갱생원 수용자 이△△, 당시 13세)
- “작업 불량이나 나오거나, 식사 중 음식을 남기면 방장이 말로 설명하지 않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쳤다. (어리다 보니) 맞으면서 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서울시립갱생원 수용자 이○○, 당시 15세)

## 처벌 목적으로 ‘구속복’ 착용, ‘신규동’ 독방 감금

(서울시립갱생원, 대구시립희망원)

- 서울시립갱생원의 경우, 규칙위반자를 처벌한다는 목적으로 ‘구속복’을 강제로 입힌 후 소위 ‘기합방’ 등의 공간에서 폭행이 이뤄졌음 (시설 관리자들은 정신질환자들의 발작을 통제하는 등의 목적으로만 쓰였다고 하나, 피해자들은 단순 규칙 위반에 대한 처벌로 쓰였다고 증언)

- “도망가다가 붙잡혀 오거나 타 원생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독방에 갔다. 독방에서는 엄청 무거운 옷을 입혀놨는데, 그 옷은 다른데는 다 막혀 있고 입만 뚫려 있었고 너무 무거워서 손을 움직일 수 없는데 그 상태로 밥을 먹어야 했다” (서울시립갱생원 수용자 이○○)
- “목공 기술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못 따라가니 ‘꿀통’ 부린다고 하면서 한 달에 10번 정도 벌방으로 끌고 갔고, 구속복을 입혀 놓고 봉사원들이 몽둥이로 때렸다.” (서울시립갱생원 수용자 이△△, 당시 14세)

- 대구시립희망원의 경우, 신규입소자는 일괄 ‘신규동’이라는 공간에 격리수용한 후 생활관을 배정했고, 수용 중 규칙위반을 하면 다시 신규동 독방에 감금하는 규정을 두었음

- 이러한 관행은 2000년대 이후까지도 유지되어, 2003. 1. ~ 2005. 7. 기간 동안 123명이 규칙위반을 이유로 독방에 감금되어, 평균 17.4일, 최대 56일간 감금 피해를 겪었음

- “신규동 복도 쪽으로 난 작은 창으로 수용된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프다, 밥 좀 넣어달라’고 하소연을 해도 시설에서 무시했다.” (대구시립희망원 수용자 서○○)
- “(수용자들끼리) 싸우면 신규동 아니면 정신병원에 갔으며 거기서 말썽 피우고 애 먹이면 바로 침대에 묶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했다.” (대구시립희망원 수용자 김○○)

▽ '대구시립희망원 운영규정'(1984. 4. 16.) 중 신규동 관련 사항

제 9 조 (신규입소자 격리 수용) 1) 입소 되는 자의 병별, 상태별, 연령별의 정상을 참작하여 정신질환자 중증은 정신병동, 결핵환자는 결핵 병동, 노약자는 일반동으로 수용보호하되 기타 신규입소자는 도주, 난동, 구타의 우려와 신분파악을 위하여 신상조사 및 조치가 끝날 때까지 신규입소자 수용동에 격리 보호한다.  
 2) (신규동) 수용보호 기간을 설정한 행위를 제외 리스는

제 41 조 (벌칙규정) 원내에서 음주, 도박, 구타, 절도, 기물 파괴, 방화, 남여 이성관계등 기타 단체 생활의 지해요인의 행위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벌칙으로 규제한다.

- 1) 정신이상자는 정신과적인 치료를 겸하면서 정신병동 독방에 연금한다.
- 2) 기타 규칙 위반자는 경증에 따라 신규동 독방에 또는 공동방에 연금하면서 정신적 육체적 훈련으로 반성 및 각성토록 한다.
- 3) 벌칙 기간내 자퇴, 귀가는 물론 수용원생 및 외부인의 면회를 불허한다.
- 4) 징계 위원회는 동 담당전 직원으로 하되, 벌칙 기간과 방법은 징계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서울시립갱생원 수용자들은 1960년대 서산개척단, 장흥개척단 등 국가 주도의 국토개발사업에 강제동원되었고, 서울시가 도시건설사업을 위해 조례<sup>1)</sup>로 추진한 '새서울건설단'에도 강제동원되었음
- 새서울건설단은 제3한강교(현 한남대교), 서울대교(현 마포대교) 건설을 비롯한 1960년대 후반 서울 전역의 도로 건설 및 보수 현장에 투입되었으나, 상당수 수용자들이 시설 간부에 의한 중간 착복 등으로 제대로 된 노임을 지급받지 못했음
- 새서울건설단 운영규정(제6조 제1항)에는 “특수임무에 있어서는 무상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특수임무의 사업범위는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광범위한 민간영역의 강제노역에 갱생원 수용자들이 동원될 수 있었음

1) 서울특별시새서울건설단설치조례 (1966. 6. 30. 제정)

▽ 새서울건설단 발족식 및 도로 정비공사 현장(1966. 4. 20.)  
(※ 사진 출처 : 서울기록원)



## ‘삼청교육대’ 방식의 신입자 교육 ... 만연한 구타·가혹행위로 폭행치사 사건 빈발 (충남 천성원)

- 충남 천성원 산하 시설(성지원, 양지원) 입소자는 필수적으로 양지원 내의 신입소대에서 원산폭격, 모래주머니 매달고 뽀뽀기, 기어서 철조망 통과 등 삼청교육대 방식의 ‘특수교육’을 받아야 했음

○ “피티 체조를 시킨다고 하면서 60키로그램짜리 모래주머니를 매달고 뽀뽀기를 하라고 하고 구식 독재 전신주를 4명이 어깨에 매고 토끼뽀기를 뛰게 하고, 군대식 훈련인 철조망 통과, 선착순 도복, 멍석말이 등 완전히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시켰다. 그 훈련을 받는 동안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매질과 발길질을 하는 것은 예사였다.” (1987년 신민당 조사 진술, 성지원 수용자 장○○)

- 이러한 군대식 운영에 따라 양지원에서는 구타·가혹행위로 인해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건이 다수 발생했고, 이 중 상당수가 폭행치사 사건임
- 1984년 6월 양지원 수용자 정○○이 중대장 등에게 구타를 당하고 5일 만에 사망했으나, 경·검찰 수사 결과 가해자는 ‘폭행치사’가 아닌 ‘전치 1주 상해’ 혐의로만 기소되어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
  - 폭행의 발생 장소, 정○○의 사망 장소 모두 양지원이며, 가해자 및 목격자가 모두 특정 가능하므로 사망원인 등의 파악이 어렵지 않았음에도, 정○○의 사체검안서에는 사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정보가 ‘미상’으로 기재됨

▽ 정○○의 사체검안서

~~사~~ ~~망~~ ~~진~~ ~~단~~ ~~서~~

(사체검안서)

No 510

1	성명	정 [redacted]	2	성별	♀ 여	3	생년월일	년 월 일	생년월일	년 월 일	
4	직업	가. 본인의 직업				나. 가구주의 직업					
5	본적	번지 호									
6	주소	충남 연기군 천왕면 송성리 116 (향정) 번지 호									
7	발병년월일	년 월 일									
8	사망년월일	) 이상 년 월 일 오후 시 분									
9	사망장소	번지 호									
10	사망의 종류	1. 자가 2. 병원 3. 의원 4. 산원 5. 기타 의료관 (2명~5명) 6. 기타									
10	사망의 종류	1. 병사 2. 외인사 가. 불려의 나. 기타의 다. 자살 ㉠ 기타 및 불상 3. 기타 및 불상									
11	사망의원인 ※(나.다)에는(가)와의 직접 의학적 인과 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기입한다.	(가) 직접 사인		) 이상		별명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 이상		수술에 주요소견 해부의 주요소견	
		1. (나) 중간선행인사									
		(다) 선행 사인									
		2. 1과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 상황									
12	외인사의 수 단 및 상황	상해발생년월일시분		년 월 일		오후 시 분					
12	추가사랑	상해 발생의 장소		신체적 상해 장소명		음면		1. 총사중 2. 비총사중			
위와 같이 <del>진단</del> (검안) 함.											
발행일		1984년 6월 20일									
면허번호		[redacted] 호		의사성명		[redacted]		[redacted]		[redacted]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redacted]									
		의료법인 [redacted] 병원									

※본원 직인이 없으면 무효임

## 시설 사망자 시체, 해부실습용으로 의과대학에 수백 구 교부 (충남 천성원)

- 부랑인시설 사망자 시체가 대학병원에 해부실습용으로 교부되었다는 주장은 부산 형제복지원과 관련해 오랫동안 제기된 바 있으나, 그간의 공식 조사<sup>2)</sup>를 통해 그 증거가 확인된 바는 없음
- 반면 이번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를 통해 충남 천성원(산하 대전 성지원)에서 사망한 수용자의 시체 수백 구가 모 의과대학에 교부된 것으로 확인됨

### ▽ 성지원 → ○○대 의과대학 시체 교부 현황

(※ 82, 85, 86년 외 사망자 수 통계 자료 부존재)

구분 연도	○○대 의과대학이 인수한 전체 시체 수	성지원 교부 시체 수	성지원 사망자 수
1982	38	36	29
1983	19	19	
1984	22	21	
1985	28	28	39
1986	10	9	46
1987 <sup>3)</sup>	4	1	
1988	2	0	
1989	4	1	
1990	7	2	
1991	14	0	
1992	13	0	
합계	161	117	

2) 1987년 신민당 진상조사단 조사, 2020년 부산시 형제복지원 실태조사 연구용역, 2022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3) 1987년 이후 시체 수급이 대폭 줄어든 이유에 대해 대한해부학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대전 성지원 사건이 발생한 이후 관계기관 공무원들의 경직과 비협조적인 태도와 사회복지제도의 변화로 말미암아 시체수급이 극도로 어려워졌다.” (대한해부학회 홈페이지 자료실, “해부학 역사”(www.anatomy.re.kr/sub02/sub03.html))

- 1982~1986년 ○○대 의과대학 교부 시체의 97%를 성지원에서 교부
- 1982년 성지원이 집계한 사망자 수는 29명이나 해부실습용으로 교부된 시체 수는 이보다 많은 36명 ⇒ 사망자 집계 오류 or 당해 사망자 시체 전체가 해부실습용으로 교부된 것으로 판단됨
- 사망 당일 또는 익일 시체교부가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연고자 인계 등의 절차는 전무했던 것으로 판단됨

▽ 성지원 사망자 시신에 대한 사체교부신청서(좌) 및 사체교부증명서(우)

No231 사체교부신청서

1. 사망자의성명: 김 [redacted] 성별: 남과 연령: 64 세
2. 사망년월일시: 1983년 7월 25일 10시 10분경경
3. 교부신청의부근: 인체의해부구조를 위한 시체의 해부
4. 보존장소: [redacted] 대학교 의과대학 시체보관실
5. 매장예정장소: 대전시 영도묘지

위 사체를 교부받고자 합니다.

1983년 7월 25일

[redacted] 대학교 의과대학장

대전시 영도묘지

과원	담당	과장	과장	과장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231 사체교부증명서

1. 사망자의본관: 미상
2. 사망자의주소: 대전시 동구 동평동 694-7
3. 사망자의성명: 김 [redacted]
4. 취급된관급사인: 크절압
5. 사망년월일: 1983. 7. 25
6. 사망장소: 대전시 동구 동평동 694-7
7. 시체보관장소: 대전시 [redacted]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시체보관실
8. 매장 예정장소: 시립 온천묘지
9. 교부 받고자 함: [redacted] 대학교 의과대학장

위 시체를 시체해부보존용 제1호 1장의 구멍이 확인되어  
대학교 의과대학장에게 시체를 교부 하였음을 증명함.

1983년도 매장

1983. 7. 26.

교 관 시 장

## 자의적 정신질환 판단에 따른 정신병동 격리 조치

(대구시립희망원, 충남 천성원)

- 진실화해위원회는 대구시립희망원, 충남 천성원(산하 연기군 양지원) 수용자 중 정신질환자로 분류된 이들의 기록을 별도로 분석했음
- 대구시립희망원 신규 입소자는 정신과 의사 입회하에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정신병동에 분류 수용되어 약물 처방을 받기 전까지 '독방'에 격리수용 했음
- 정신과 의사 진단 전의 기초 상담은 일반 직원이 진행했는데, 이 때 신규 입소자 스스로 진술한 입소 전 생애에 대해 별다른 근거 없이 '신빙성이 없음', '횡설수설' 이라 판단해 정신질환자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됨

### ▽ 대구시립희망원 정신질환자 분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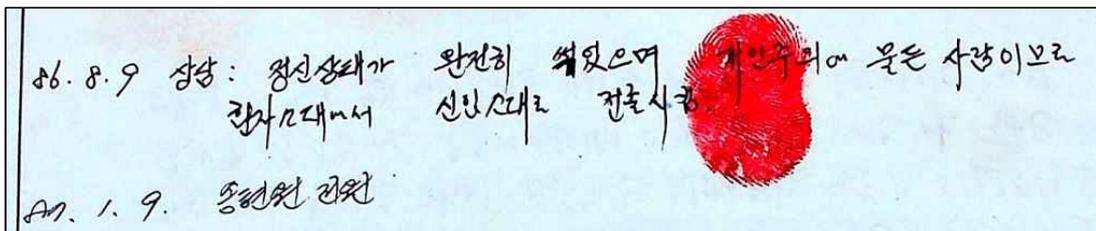
성명 (성별/나이)	입퇴소 이력	건강 상태	상담기록
정○○ (남, 43)	(입) 84-11-05 (퇴) 85-01-12 (최종퇴소: 도주)	분열증	(최초입소시점) 전북 김제 이하불상 8세대 가출하여 떠돌이 생활을 했다고 하며 농촌에서 남의집 머슴살이를 했다고 하며(신빙성이 없음) 현재 상태는 말을 잘하지 않으며 차림새는 완전 걸인 풍이며 몸에서 악취가 많이 나며 멍청하게 앉아 있음 84-11-13. 어려서 부모 잃고 시장에서 혼자 살았다며 횡설수설 84-11-29. 갈 곳이 없다며 안정되어 있음
강○○ (여, 28)	(입) 84-12-31 (퇴) 85-02-08 (최종퇴소: 도주)	정신증	(최초입소시점) (...) 질문에 반항적이며 횡설수설해 대화 불능 85-01-08 주소지를 말하고 있으나 주소지에서 5년 전 가출 청량리노 병원, 부녀보호소 등지로 살았다 하나 횡설수설 신빙성이 없으며 계속 중얼중얼거림 85-01-14 갈곳이 없는 자로 본원 장기수용 요망됨 (...)

- 충남 천성원은 1986. 12.경 연기군 양지원 바로 맞은편에 정신요양시설 송현원을 설립하고, 1987. 1.경 기존 양지원 수용자 100여 명을 송현원

으로 전원했음

- 그러나 해당 수용자 중 상당수가 양지원 수용 당시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전원 조치 며칠 전에 100여 명의 정신과 진단서가 일괄 작성되었음
- 이 중에는 농아자라는 사실 외에 정신병력이 없음에도 정신요양원에 전원된 사례, “정신상태가 완전히 썩었으며 개인주의에 물든 사람”이라는 일종의 도덕적 판단 하에 징벌적 전출조치를 받은 후 정신요양원으로 전원된 사례 등이 있음
- 이를 통해 볼 때, 정신요양원 전원 조치는 대상자의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니라, 신규시설의 인원 확충과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자의적으로 정신 질환자로 분류된 인원을 격리한 것으로 판단됨

▽ 양지원 정신요양원 전원 대상자 신상기록카드 일부





- 전○○ 씨는 1993년부터 충남 연기군 소재 양지원에 수용되어 있다가 1998년 7월 양지원 내에서 구타·사망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형제들이 시설을 찾아가 퇴소했음
- 퇴소 후 얼마간 가족들과 지냈으나, 1998년 11월경 천안역에서 신원 미상의 스님이 국밥을 사준다는 말에 따라갔다가 어떤 차에 강제로 태워져 납치되었고, 이후 알 수 없는 이유로 대구시립희망원에 강제 수용되었음
- 전 씨는 2022년 7월 희망원에서 퇴소해 A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자립주택에서 생활하기 시작했고, 2022. 11. 3.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그간의 피해를 진술
- 전 씨는 진술조사에서 희망원 입소 전 고향 마을, 부모 및 형제 이름을 정확하게 진술했는데, 조사에 동석한 A 장애인단체 소속 사회복지사는 24년간 가족과 생이별한 지적장애인 전 씨가 가족들의 정보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전 씨의 가족 찾기에 나섬
  - 조사 나흘 뒤인 7일, 인근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가족 정보에 기초해 원래 제적등본 발급받고, 이어 대구동부경찰서에 방문해 가족찾기 문의
  - 형사과 전산조회 결과, 전 씨의 누나 전△△과 연락이 바로 닿아 다음 날 24년 만에 가족 상봉

(끝)